

1. 개정이유

자동차용 내압용기 규정을 타 법규와 조화하고 실증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규제를 완화하여 수소전기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액화천연가스·액화석유가스 연료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액화석유가스(LPG) 내압용기 설계변경 검사항목과 방법을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과 조화하여 인증시험 실효성 강화(안 별표3)
- 나. 압축수소가스 용기 안전장치 수압반복가압시험에 사용되는 유체의 응고점을 명시하여 시험 오류 예방(안 별표7)
- 다. 액화천연가스(LNG) 연료자동차 내압용기 외측면 간격을 완화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개선하고,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토록 규정(안 별표9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의 3.1.3 중 ‘제조한 용기에 대하여 표 7.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’를 ‘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법 시행규칙 별표5의 4제1호나목 2)에 따른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.’로 변경하고, ‘표7. 설계단계검사 항목’을 삭제하고, 3.1.3.1부터 3.1.3.8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1.3.1 용기 재료를 변경하는 경우

3.1.3.2 설계 두께를 5%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

3.1.3.3 실제 사용두께를 10%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

3.1.3.4 동체 외경을 5%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

3.1.3.5 용기길이(내압부분에 한정한다)를 50%(2부 구조의 용기는 5%)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

3.1.3.6 개구부의 수량, 형상 및 치수, 경판의 형상 및 치수를 변경하는 경우

3.1.3.7 용접의 종류, 용접의 재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

3.1.3.8 내압시험압력을 증가시키는 경우

별표7의 2.1.3.5.3.1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최소재료온도 수압반복시험에 사용하는 액체는 응고점이 -40°C 이하인 액체를 사용한다.

별표9의 2.1.1.1.6 중 ‘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20cm 이상 이상’과 ‘차체의 측면으로부터 10cm 이상’을 삭제하고, 별표9의 2.1.1.1.18 중 ‘자동차의 운전실 또는 객실 위에’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내압용기 설계단계검사 합격증

합격증번호 :

Issued to ;

발행업소명
소재지

신청인 :

내압용기 종류 :

도면번호 :

내압용기 재료 :

내압용기 사양 :

설계수명 :

특기사항 :

위의 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발행일자 :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(○○본부(지사))

용기부속품 설계단계검사 합격증

제 호 :
 상 호 :
 소재지 :
 대표자 :
 품 명 :
 모델명 :
 사용가스 :
 유효기간 :
 검사성적 :
 검사원 :

기술책임자 :

위의 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발행일자 :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용기부속품 검사성적

제 호 :

검사방법 :

품 명 :

모 델 명 :

사용가스 :

용기부착부규격 :

충진구규격 :

개폐방식 :

몸통재료 :

안전장치형식 :

안전장치작동온도 :

안전장치작동압력 :

내압시험압력 :

기밀시험압력 :

기타 :

설계 또는 생산단계 부적합통지서

상 호			
성 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사무소 소재지	(전화 :)		
검사원 성명		검사년월일	. . .
검사 범위			

부 적 합 내 용	
부적합내용 (시설및기술기준항목)	
조치필요사항	※ 수리, 보수, 교체 등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제5항 및 제57조의9제2항에 따라(설계단계검사, 생산단계검사)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(○○본부(지사))

검 사 생 략 확 인 서				
발급번호				
신청자 성명 (법인의 경우 대표자)		생년월일		
소재지			전화번호	
품 목 명	규 격(모 델)	수량	일련번호	비 고
생략근거	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 호	생략사유		
제 조 국			제조회사	
통관(예정)지				
<p>위 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0제5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대상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>※ 신청인 주의사항 : 위와 같이 검사가 전부생략 된 내압용기는 해당 사유의 목적·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차후 법정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, 해당 목적 및 용도이외에 판매 또는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, 위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발급일자 :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 font-weight: bold; color: blue; margin-top: 20px;">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</p> <p>□ 발급 본부(지사)명 :</p>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